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40호

「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4년 04월 16일  
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가.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(제7조)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」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

나.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(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선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예규는 「도선법」 제9조제4항”을 “예규는 「도선법」 제9조제4항”으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, “동해항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”을 “선박운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예규는 「도선법 시행규칙」 제17조”를 “예규는 「도선법 시행규칙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예규는 「도선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</u>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,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(이하 “청장”이라 한다.)이 <u>당해</u>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지하게 함으로써 <u>동해항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<u>예규는 「도선법 시행규칙」 제17조[별표 3]에 따른 동해항 도선구에서</u>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7조(재검토기한)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예규는 「도선법」 제9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</u> <u>당</u> ----- ----- <u>않</u> <u>다고</u> ----- ----- ----- <u>선박운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<u>예규는 「도선법 시행규칙」 제1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제7조(재검토기한) <u>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</u></p>

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·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